

1. 개정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그 외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추가(안 제14조의4)

나. 아동카드의 보호의뢰 사유에서 “혼외자” 삭제(안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의 제목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을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동학대행위자의”를 각각 “아동학대행위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학대행위자의”를 “아동학대행위자등의”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의뢰 사유(※중복 체크 가능)란 중 “미혼부모·혼외자”를 “미혼부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5(<u>아동학대행위자에</u> 대 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 에 따라 <u>아동학대행위자</u> 에게 다 음 각 호의 상담·교육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u>아동학대행위자의</u> 특성에 맞는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 하기 위해 미리 <u>아동학대행위자</u> 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14조의5(<u>아동학대행위자등</u> 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 ----- ----- ----- ----- <u>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u> <u>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u> <u>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u> <u>한다)</u> ----- . ----- <u>아동학대행위자등의</u> ----- ----- <u>아동학대행위자</u> <u>등의</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아동학대행위자의</u> 특성을 고려한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5. ----- <u>아동학대행위자등의</u> ----- -----